

제 회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

2020. 5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첫째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기존 학교에 두었던 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」가 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」로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련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.
- 둘째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서신·우편·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입니다.
- 셋째, 학부모 활동 목적 및 학부모회 기능관 관련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입니다.

□ **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**

-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입니다.
학부모 활동 목적을 ‘교육활동 지원’ 에서 ‘교육활동 참여’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.
-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호입니다.
학부모회 기능 중 ‘학부모 자원봉사’ 부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.
-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입니다.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.
-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5항입니다.
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‘서신·우편·전자투표’ 로 확대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2020.4.23.부터 5.12.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.

□ **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**

감사합니다.